

[일련번호 : 60]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낙찰차액 사용관련 규정 미준수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상경비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산업무 담당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2년 및 2023년 수방대책 배수지원 민간위탁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량 증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변경된 내용을 낙찰차액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낙찰차액 사용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예정금액	최초계약금액	낙찰차액	실계변경액(증액)	준공금액	비고
1	2022년 수방대책 배수지원 민간위탁 용역	21,000	21,000	18,900	2,100	2,100(1차)	21,000	낙찰차액 포함 예산 전액사용
2	2023년 수방대책 배수지원 민간위탁 용역	40,000	21,000	18,900	2,100	21,100(1차)	40,000	낙찰차액 포함 예산 전액사용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차액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